

2022년 드림스드림 정기총회

2023. 01. 19

드림스드림(Dreams Dream)



2022년도 드림스드림 정기총회

목 차

1. 정기총회 개최공고

- 1) 정기총회 개최공고문

2. 정기총회 진행순서

- 1) 사회자
- 2) 개회전 성원보고
- 3) 개회선언
- 4) 인사말
- 5) 2022년도 사업경과보고 및 활동현황
- 6) 2022년도 회계결산보고
- 7) 2023년도 사업계획(안)보고
- 8) 2023년도 회계예산(안)보고
- 9) 총회안건심의
제1호 안건. 정관변경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임원진 선출 승인의 건
제3호 안건.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예산 승인 및 집행의 건
- 10) 투표결과 보고
- 11) 폐회선언

1-1 정기총회 개최공고

2022년 정기총회 개최 공고

드림스드림 정관 제16조 2항에 의거 2022년 드림스드림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공고하며, 모든 회원에게는 무선, 문자, SNS 등을 통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자 : 2023년 01월 19일(목요일) 오후 6:00 ~ 8:40

나. 장 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52, B1

[1부 행사: 저녁식사 오후 6:00 ~ 6:40, 정기총회 6:40 ~ 7:30, 2부 행사: 7:30 ~ 8:40]

다. 안 건 : 제1호 안건. 정관변경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임원진 선출 승인의 건
제3호 안건.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예산 승인 및 집행의 건

라. 참석대상 : 드림스드림 모든 회원(후원자, 운영이사, 감사, 역할이사, 팀장, 재능기부자 및 드림스드림 공식 단톡방 멤버, 학교짓기 담당자 및 기타)

※ 단, 대리인은 회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성년자(2004년 01월 19일 이전 출생자)에 한 함(대리인이라는 확인이 사전에 되어야 함)

마. 참고사항 :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총회 개최 1일전(2022.01.18. 오후 05:00)까지 통지해 드린 정기총회 자료를 참고하시어 '온라인서면결의서'의 각 항목에 체크후 서명 또는 날인 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연 락 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9, 4층 1호(삼성동, 동신빌딩)
TEL : 070-7500-3623 E-mail: dreamsdream7@gmail.com

2022년 12월 20일

드림스드림(Dreams Dream)



2-1. 2022년도 사업경과보고

2022년도 사업진행 현황

완공: 33개 학교 완공 (2022.12.31.일 기준, 전체 누계 106개 완공) (2021년 23개 완공)

1. 27호 우간다 부시아 장애인학교 A
2. 54호 인도네시아 숨바 웨에위뚜
3. 56호 우간다 도요로학교
4. 66호 에티오피아 까르짜학교
5. 68호 남아공 프로모사학교
6. 69호 짐바브웨 치사라사라학교
7. 71호 라이베리아 자와제이학교
8. 77호 에티오피아 관과 아바야 깔레히윳학교
9. 83호 방글라데시 볼롭뿔학교
10. 86호 시에라리온 마예리마학교
11. 87호 에스와티니 에쿠제니 정보기술학교
12. 94호 에스와티니 므신다학교
13. 96호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뱅거빌학교
14. 97호 토고 아탁파메학교
15. 99호 코트디부아르 야까세매 초등학교
16. 106호 에스와티니 예줄위니학교
17. 110호 콜롬비아 칼레 양계 학교
18. 123호 코트디부아르 야까세매 그레이스 학교
19. 154호 시에라리온 마올로 미디어아트스쿨
20. 168호 시에라리온 마올로 정보기술학교
21. 169호 시에라리온 마올로 헬스뷰티스쿨
22. 200호 우간다 부시아 마사바 장애인학교 B
23. 202호 시에라리온 마올로 스마트유치원
24. 204호 시에라리온 마올로 스마트초등학교
25. 206호 시에라리온 마올로 스마트중고등학교
26. 208호 시에라리온 마올로 스마트장애인스쿨
27. 210호 시에라리온 마올로 스마트메이커스쿨
28. 212호 시에라리온 마올로 스마트팜스쿨
29. 213호 시에라리온 마올로 스마트패션스쿨
30. 214호 시에라리온 마올로 스마트푸드베이커리스쿨
31. 215호 시에라리온 마올로 스마트건축스쿨
32. 216호 시에라리온 마올로 스마트교사리더십스쿨
33. 222호 탄자니아 음봐라 은혜학교

2022년도 사업진행 현황

공사중인 학교: 44개 학교 (2022.12.31 기준)

31호 방글라데시 크리스노골학교	109호 우간다 나무사레 썸베 학교
40호 레바논 자흘레 청소년직업학교	111호 캄보디아 트모방 농업기술 학교
45호 필리핀 까비떼 마라곤돈학교	112호 몽골 허스 오양가 학교
46호 볼리비아 코참밤바 아브라학교	113호 탄자니아 겐디 학교
47호 파키스탄 카라치 지아까로니에학교	114호 탄자니아 마구구2 학교
57호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가야학교	145호 탄자니아 차르데와 학교
61호 시에라리온 코소타운학교	146호 탄자니아 마주치 학교
64호 인도 마니푸르주 세나파티학교	147호 탄자니아 제제에이 학교
72호 캄보디아 트나웃 크뿌어 다니엘학교	148호 탄자니아 마템베 학교
74호 짐바브웨 마꼬사학교	149호 탄자니아 이쌍가 학교
80호 레바논 시리아난민 여학교	151호 바누아투 에타스 학교
89호 코트디부아르 야까세매 그레이스 빌리지 정보기술학교	157호 미얀마 양곤 에창따야 다니엘학교
90호 탄자니아 참베와학교	171호 차드 부달박아라
93호 에스와티니 에줄위니 히니학교	179호 캄보디아 프놈펜 도레미 미디어아트스쿨
100호 레바논 자흘레 시리아난민 정보기술학교	180호 캄보디아 프놈펜 도레미 교사리더십스쿨
101호 에스와티니 마세트제니 학교	220호 캄보디아 프놈펜 스마트아트스쿨
102호 에스와티니 므바야 학교	224호 러시아 연해주 생명농업학교
103호 에스와티니 드부드부시니 학교	269호 탄자니아 마씨가티 학교
104호 에스와티니 안티오크 학교	285호 네팔 보즈푸르학교
105호 에스와티니 엔톤도지 학교	286호 인도 시킴 강토크학교
107호 키르기즈스탄 게스5 학교	287호 네팔 사르라히학교
108호 모잠비크 시모이우 학교	289호 라오스 비엔티안 장애인 스마트 스포츠스쿨

2022년도 학교 짓기 승인 결과: 53개 학교(11억 4000만원)

(2021년에는 107개 학교 22억 9000만원 승인)

261호	남아공 소웨토 알파 학교	288호	네팔 파탄 콜카나학교
262호	파키스탄 카이르푸르 세타르자 학교	289호	라오스 비엔티안 장애인 스마트 스포츠스쿨
263호	가나 프람프람 2 학교	290호	우간다 부시아 장애인직업재활학교 B
264호	시에라리온 마꾸르베 중학교	291호	과테말라 뿌라도 스마트스포츠스쿨
265호	탄자니아 루갈라 학교	292호	에스와티니 로밤바 엔카니니학교
266호	케냐 멘잠웨니 은헤 학교	293호	에스와티니 만지니 분야학교
267호	탄자니아 카울로우 학교	294호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낙원학교
268호	파키스탄 카이르푸르 샤다라 학교	295호	미얀마 양곤 야다나빠킨학교
269호	탄자니아 마씨가티 학교	296호	에스와티니 음크웰리학교
270호	말라위 음곰베 스마트교사리더십스쿨	297호	탄자니아 잔지바르 에버그린 유치원
271호	미얀마 에따야 어메이징 스쿨	298호	탄자니아 잔지바르 에버그린 초등학교
272호	말라위 음곰베 스마트정보기술학교	299호	에스와티니 람가비학교
273호	인도네시아 자바 살라띠가학교	300호	에스와티니 은카바학교
274호	말라위 음곰베 스마트팜스쿨	301호	필리핀 루손 뚜게가라오학교
275호	말라위 음곰베 스마트적정기술스쿨	302호	에스와티니 엘루콜웨니학교
276호	말라위 카우마 창곰베 학교	303호	미얀마 만달레이 렛카웅학교
277호	탄자니아 아루샤 갈라포학교	304호	에스와티니 말라바찌니학교
278호	태국 방콕 온눗 어울림 학교	305호	한국 북한청소년 다음학교
279호	코트디부아르 뻬띠에 드림학교	306호	탄자니아 세렝게티 누루학교
280호	에티오피아 볼로소 봄베학교	307호	에스와티니 시드와시니학교
281호	에티오피아 소말리랜드 하게사학교	308호	인도네시아 톤다노 시누이안학교
282호	에티오피아 와카 타차학교	309호	튀르키예 크르칼레 아프간난민학교
283호	에티오피아 킨도학교	310호	튀르키예 악사라이 아프간난민학교
284호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뱅거빌 카멜학교	311호	탄자니아 키논도니 Mbopo 유치원
285호	네팔 보즈푸르학교	312호	탄자니아 키논도니 Mbopo 초등학교
286호	인도 시킴 강토크학교	313호	우크라이나 집도밀 전쟁고아학교
287호	네팔 사르라히학교	*52개 학교는 학교당 예산 2천만원씩 책정되었고, 305호 탈북자 학교는 1억원 책정됨	

2-2. 2022년도 활동 현황

2022년도 주요 활동 현황

1. 정기이사회 (10회)

이사회에서 261호~313호 53개 학교 짓기 선정(예산: 11억 4000만원) 및 역할이사 임명
(2월 17일, 3월 17일, 4월 21일, 5월 26일, 6월 21일, 7월 28일, 8월 25일, 10월 20일,
11월 17일, 12월 15일)

2. 정기모임 (11회)

- 1) 정기모임에서 해외학교 짓기 브리핑, 학교 운영현황 점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강의
- 2) 2월 17일, 3월 17일, 4월 21일, 5월 26일, 6월 23일, 7월 28일, 8월 25일, 9월 22일,
10월 20일, 11월 17일, 12월 15일

3. 글로벌타이거팀: 스마트스쿨 팀별 모임 및 팀장모임

- 1) 전체 정기모임: 상반기 진행(2월, 3월, 4월) 및 스마트스쿨 온오프라인 미팅 진행
- 2) 스마트스쿨 팀장 오프라인 미팅: 7월 16일

4. MOU 체결

- 1) (주)메가인베스트먼트(대표 박종혁)
- 2) 드림래더(대표 장순민)

5. 홍보 및 기타

- 1)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밴드 활성화
- 2) 아너파운더 클럽 운영
(레벨I-1억 후원자, 레벨II-3억후원자, 레벨III-5억 후원자, 레벨 IV-5억이상 기부 유도자)
- 3) 학교 짓기 약정을 통한 후원 약정 활성화

2022 스마트스쿨을 연구하는 글로벌타이거팀 진행 상황
(만방에 만개 스마트스쿨 짓기 연구.실행팀)

1. 드림스드림 스마트스쿨 구성

A. 교육분과

- 1) 스마트교사리더십스쿨: 팀장 한건수 2) 스마트 유치원: 팀장 박용욱
- 3) 스마트 초등학교: 팀장 박정애 4) 스마트 중고등학교: 팀장 조민율
- 5) 스마트 장애인학교: 팀장 김주윤

B. 기술분과

- 6) 스마트 메이커스쿨: 팀장 고봉익 7) 스마트 정보기술학교: 팀장 이태규
- 8) 스마트 팜스쿨: 팀장 김성일 9) 스마트 적정기술스쿨: 팀장 이승언

C. 아트스포츠분과

- 10) 스마트 미디어스쿨: 팀장 오혁 11) 스마트 웹툰애니메이션스쿨: 팀장 김종두
- 12) 스마트 아트스쿨 13) 스마트 뮤직스쿨
- 14) 스마트 스포츠스쿨

D. 경영금융분과

- 15) 진로창업스쿨: 팀장 최종원 16) 스마트 물류스쿨: 팀장 박명규
- 17) 스마트 패밀리파이낸싱스쿨 팀장 이동화

E. 의식주건강분과

- 18) 스마트 패션스쿨: 팀장 정충효 19) 스마트 푸드스쿨: 팀장 양창국
- 20) 스마트 베이커리스쿨: 팀장 김준봉 21) 스마트 건축스쿨: 팀장 최수혁
- 22) 스마트 헬스뷰티스쿨: 팀장 서원균

2. 2022년에 많은 종류의 스마트스쿨 짓기를 승인하고, 글로벌타이거팀을 통해 스마트스쿨에 대해 연구하는 한해였다.

- 1) 스마트유치원팀에서 영어로 제작된 요한복음암송앱을 개발했다. (앱이름: Worthy Words)
개발사: (주)러닝앤코 (최창욱 대표)
- 2) 스마트 메이커스쿨 코어 모델을 만들었다.
- 3) 스마트웹툰애니메이션스쿨에서 1년간 꾸준히 캄보디아 학교와 웹툰 교육 진행했다.
- 4) 다른 스마트스쿨들도 코로나 이후에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다.

2-3. 2022년도 회계결산보고

2022년도 결산세부내역서

1. 세 입

(기간: 2022.01.01. ~12.31, 단위 : 원)

목	예 산 액(원)	산 출 내 역	비 고
회 비			
후 원 금	617,010,660	후원자를 통한 후원금 모금	
보 조 금			
잡 수 익	41,458	은행 이자수입	
2021년 이월금	77,763,041		
계	694,815,159		

2. 세 출 (기간: 2022.01.01.~12.31,단위:원)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드림스드림 146호 탄자니아 마주치 학교 드림스드림 147호제제에이학교, 드림스드림 148호마템베학교	60,000,000	2022.01.06
드림스드림 87호 에스와티니 에쿠제니 정보기술학교 기자재	1,173,159	2022.01.17
드림스드림 78호 캄보디아 캄뵙치낭 정보기술학교 기자재	5,723,973	2022.01.17
드림스드림 102호 에스와티니 므바야 학교	20,000,500	2022.02.08
에티오피아 학생 장학금 지원(아벨)	1,620,500	2022.02.22
드림스드림 149호 탄자니아 이쌍가 학교	19,999,106	2022.03.17
드림스드림 100호 레바논 자흘레 시리아난민 정보기술학교	20,000,500	2022.03.21
드림스드림 103호 에스와티니 드부드부시니 학교	20,000,500	2022.03.21
드림스드림 108호 모잠비크 시모이우 학교	20,000,500	2022.03.25
드림스드림 222호 탄자니아 음봐라 은혜학교	20,000,500	2022.03.25
드림스드림 269호 탄자니아 마씨가티 학교	19,999,536	2022.03.30
드림스드림 110호 콜롬비아 칼레 양계 학교	20,000,500	2022.03.30
드림스드림 104호 에스와티니 안티오크 학교	20,000,500	2022.04.22
드림스드림 209호 캄보디아 프놈펜 스마트적정기술스쿨	20,000,000	2022.04.25
드림스드림 69호 짐바브웨 치사라사라학교 기자재	5,000,500	2022.05.09
드림스드림 215호 시에라리온 마올로 스마트건축스쿨 드림스드림216호시에라리온마올로스마트교사리더십스쿨	50,000,500	2022.05.31
드림스드림 109호 우간다 나무사레 쑤베 학교	20,000,500	2022.06.07
드림스드림 105호 에스와티니 엔톤도지 학교	20,000,500	2022.06.09
드림스드림 287호 네팔 사르라히학교	20,000,500	2022.06.23
드림스드림 286호 인도 시킴 강토크학교	20,000,500	2022.06.23
드림스드림 285호 네팔 보즈푸르학교	20,000,500	2022.06.23
드림스드림 289호 라오스 비엔티안 장애인스마트 스포츠스쿨	20,000,500	2022.06.24
드림스드림 106호 에스와티니 에줄위니	20,000,000	2022.07.05
드림스드림 119호 캄보디아 찐력 솔로몬 학교	20,000,500	2022.07.18
드림스드림 123호 코트디부아르 야까세매 그레이스 학교	20,000,000	2022.07.26
드림스드림 113호 탄자니아 겐디 학교	20,000,500	2022.07.26
드림스드림 107호 키르키즈스탄 게스5 학교	19,999,875	2022.09.06
드림스드림 112호 몽골 허스 오양가학교	20,000,500	2022.10.13
드림스드림 121호 말라위 분다 학교	10,000,500	2022.10.19
드림스드림 171호 차드 부달박아라	20,000,500	2022.10.19
드림스드림 157호 미얀마 양곤 에창따야 다니엘학교	20,000,500	2022.11.24
드림스드림 220호 캄보디아 프놈펜 스마트아트스쿨	20,000,000	2022.11.25
드림스드림 114호 탄자니아 마구구2학교	20,000,500	2022.12.20
A. 학교 짓기 지출 소계	653,527,149	
SMS 수수료	21,600	
인증서비용	4,400	
B. 기타 지출 소계	26,000	
C. 2022년 이월금액	41,262,010	
계(A+B+C)	694,815,159	

2022년도 수지결산서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① 회 비			① 인건비		
② 후원금		617,010,660	② 운 영 경 비		
③ 후원금품			③ 사업비	학교짓기 지출	653,527,149
④ 보조금	①			SMS 수수료	21,600
	②			인증서비용	4,400
⑤ 수익사업					
⑥ 기타수입	은행 이자수입	41,458			
⑦ 전년도 이월액		77,763,041	④ 차년도 이월액		41,262,010
⑧ 차입금					
합 계		694,815,159	합 계		694,815,159

2-4. 2023년도 사업계획(안) 보고

2023년도 사업 방향 및 세부계획		
주요 방향	1. 100개 학교 짓기 심의승인(314~413호)	
	2. 정기후원자를 확대하여 85개 학교 짓기까지 후원금 모금(누계 235개)	
	3. 재능기부 확대와 역할분담을 통해 100% 재능기부 활성화	
	4. 국내와 해외지부 활성화 및 글로벌 운동으로 확산	
	5. 만방에 만 개 스마트스쿨을 짓기와 운영을 위한 모델 만들기	
세부 계획	1	1) 기존 학교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관련 단체들과 동역 2) 신규지역에 대한 학교 짓기 및 기존 학교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스마트스쿨을 통한 지원
	2	1) 다양한 계층 동참을 위한 소액 정기후원자 모집 2)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자 모집
	3	1) 역할이사/팀장/후원자들에게 역할분담을 통한 재능기부 동참 활성화 유도 2)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 활동 연구 3) 운영중인 현지 학교에 방문하여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
	4	1) 본부와 국내외 지부와 지속적인 의견 및 정보공유 2) 국내외 권역별/도시별 대표를 세우고 모임 활성화
	5	1) 정기적인 글로벌타이거팀 미팅을 통해 22개 스마트스쿨의 모델 만들기 2) 스마트스쿨이 현지에 맞게 세팅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 및 지원

2-5. 2023년도 회계예산(안)보고

1. 수 입

목록	예 산 액(원)	산 출 내 역
회 비	0	
후 원 금	1,000,000,000	
2022년 이월금	41,262,010	2022년 12월 31일 기준
계	1,041,262,010	

2. 지 출

목록	예 산 액(원)	산 출 내 역
학교 짓기 지출	980,000,000	2023년 12월 31일 기준 45개 학교 짓기 지출(탈북자 학교 1억)
기타지출	100,000,000	스마트스쿨 관련 예산
2023년 이월금	41,262,010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계		

2-6. 총회안건심의

제1호 안건: 정관변경 승인의 건

1. 안건상정

제1호 안건. 정관변경 승인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제안사유

국내외 지역에 10,000개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고 지역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드림스드림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드림스드림 정관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2항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본 총회를 통하여 정관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3. 근거

드림스드림 정관 제18조, 제19조

4. 의결사항

정관변경 승인 요청의 건을 의결합니다.

(* 2022년 정기총회 정관 변경할 내용 및 정관 참조)

<2022년 정기총회 정관 변경할 내용>

기존내용	변경내용
제9조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부대표 7인이상 (이사회 의결권이 있는 운영이사의 호칭이며 부회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한다.)	제9조 1. 이사장 1인 2. 회장 1인 3. 수석부회장 1인 4. 사무총장 1인 5. 부회장 7인이상 (이사회 의결권이 있는 운영이사의 호칭이며 7인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1. 회장(대표)은 운영이사 중 2인을 선정한 후 제비뽑기로 최종 1인을 선임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이 있는 임원(회장, 부회장, 운영이사)과 감사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운영이사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고 선임한다. 2. 회장(대표)은 이사회에서 운영이사 중 2인을 선정한 후 제비뽑기로 최종 1인을 선임한다. 3. 이사회의 의결권이 있는 임원(이사장 , 회장, 수석부회장 , 사무총장 , 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2. 운영이사(회장 제외)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후 총회의 추인 또는 의결을 통하여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2. 이사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운영이사 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후 총회의 추인을 통하여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및 이사회에서 임명한 자) 1.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 대표가 된다. 2. 의결권이 있는 운영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부회장: 회장과 협의하여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인 결정들을 하며 사무국에 업무를 부과한다. -운영이사: 이사회에 참여하여 단체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총회에서 통과된 예산.결산.사업계획을 집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및 이사회에서 임명한 자) 1.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2.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대표가 된다. 3. 의결권이 있는 운영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수석부회장: 회장과 협의하여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결정하고 사무국 업무를 조율하며 회장 궐위시 대행한다. - 사무총장: 총회에서 통과된 예산.결산.사업계획을 회장과 수석부회장과 협의하여 집행한다.

기존내용	변경내용
4.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회장, 서기, 역할이사, 팀장, 국가별대표(또는 국가별지부장), 지역별대표(또는 지역별지부장)를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규정에 적용된다. -사무국장: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단체의 재정 및 운영을 관리한다.	5.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기, 역할이사, 팀장, 국가별대표(또는 국가별지부장), 지역별대표(또는 지역별지부장)를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규정에 적용된다. -사무국장: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단체의 재정 및 운영을 관리한다.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운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하여 7인 이상)와 감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운영이사 7인 이상과 감사로 구성한다.
제26조 (서면결의 허용)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모든 안건을 서면결의로 허용하지는 않으며 특히 정관변경이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서면결의 허용)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호 안건: 임원진 선출 승인의 건(이사장,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1. 안건상정

제2호 안건. 임원진 선출 승인의 건(이사장,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제안사유

운영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드림스드림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총회에서 통과된 예산, 결산, 사업계획의 직무 등을 함께 논의하는 의결기관입니다. 드림스드림 업무의 부족함 없이 잘 진행하기 위해 운영이사 와 감사의 사임 및 선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근거

드림스드림 정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4. 의결사항

회장, 사무총장 사임 및 이사장,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선임의 건을 의결합니다.

구 분	사 임	선 임
이사장		임 채 종 (75년생)
회장(대표)	임 채 종 (75년생)	최 수 혁 (69년생)
수석부회장 (수석부대표)		고 봉 익 (75년생)
사무총장	김 성 일 (66년생)	한 건 수 (78년생)

제3호 안건: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예산 승인 및 집행의 건

1. 안건상정

제3호 안건.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예산 승인 및 집행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제안사유

드림스드림의 목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드림스드림 정관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24조 이사회회의 의결 및 제32조 제33조 예산편성 및 결산, 회계감사의 규정에 의거선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예산 승인 및 집행을 한 후 임시 또는 정기총회를 통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3. 근거

드림스드림 정관 제18조, 제24조, 제32조, 제33조

4. 의결사항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결산 승인 및 집행의 건을 의결합니다.

2-7. 투표결과 보고

3- 폐회선언

드림스드림(Dreams Dream)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드림스드림 (Dreams Dream)”(이하 “단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단체는 수입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다수로 하면서, 학교가 없는 국내외 지역에 학교를 짓고 운영하여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고 구호 및 지역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단체의 주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제4조(사업)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지역에 학교건립 관련 업무일체
2. 학교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일체
3.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업무일체
4. 구호 및 지역개발 관련 업무일체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자로 한다.
2. 단체의 회원은 온라인 가입신청서나 오프라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기본정보를 제공한 사람으로 한다.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단체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단체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준수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단체에 연락 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탈퇴서를 제출 후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후원금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이사장 1인
2. 회장 1인
3. 수석부회장 1인
4. 사무총장 1인
5. 부회장 7인 이상 (이사회 의결권이 있는 운영이사의 호칭이며 7인 이상으로 한다.)
6. 감사 2인(이사회 참석은 가능하나 의결권은 없다.)

제10조(임원의 선임)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운영이사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고 선임한다.
2. 회장(대표)은 이사회에서 운영이사 중 2인을 선정한 후 제비뽑기로 최종 1인을 선임한다.
3. 이사회 의결권이 있는 임원(이사장,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4. 임기가 만료된 운영이사, 감사는 임기만료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운영이사는 사임서 제출 후 궐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임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운영이사 3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임시로 선임하도록 하며 총회에서 의결을 구하도록 한다.

제1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등) 의결권이 있는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임서가 회장에게 제출되어 수리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운영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후 총회의 추인을 통하여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단,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이사회에서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및 이사회에서 임명한 자)

1.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2.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대표가 된다.
3. 의결권이 있는 운영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수석부회장: 회장과 협의하여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결정하고 사무국 업무를 조율하며 회장 궐위시 대행한다.
 - 사무총장: 총회에서 통과된 예산.결산.사업계획을 회장과 수석부회장과 협의하여 집행한다.
4. 감사는 단체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을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시행하며 감사의 자격은 운영이사나 역할이사를 해본 사람이거나 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5.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회장, 서기, 역할이사, 팀장, 국가별대표(또는 국가별 지부장), 지역별대표(또는 지역별지부장)를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규정에 적용된다.
 - (1) 운영이사 3인의 동의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2) 사무국장 1인, 서기, 국가별대표, 지역별대표는 1인으로 하며 역할이사와 팀장의 정수는 제한이 없다.
 - (3) 이사회 참석은 가능하나 이사회 의결권은 없으며 단체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사무국장, 서기, 역할이사는 의결권이 없으며 이사회 결정사항과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사무국장: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단체의 재정 및 운영을 관리한다.
 - 서기: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기록 및 보관을 담당한다.
 - 고문이사: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분야별 고문을 수행한다.
 - 자문이사: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분야별 자문을 수행한다.

- 기획이사: 단체가 나아갈 방향과 행사들을 기획한다.
 - 사업이사: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실행이사: 단체의 필요한 업무나 행사들이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미디어이사: 미디어를 잘 활용하여 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 IT온라인이사: IT기술을 잘 활용하여 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 건축이사: 해외학교 건축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홍보이사: 대외적인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 콘텐츠이사: 해외학교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콘텐츠를 연구하고 보급한다.
 - 국내지부이사: 국내지부를 조직하고 활성화를 시킨다.
 - 글로벌이사: 해외에 학교가 필요한 곳을 발굴하며 해외지부를 활성화 시킨다.
 - 문화이사: 문화, 공연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종보이사: 진행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조율하고 격려한다.
 - 팀장: 각 팀에 맞는 역할이사의 지사를 잘 따른다.
 - 국가별대표(국가별지부장), 지역별대표(지역별지부장):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단체에 대한 활동을 수행한다.
- (4) 사임하고자 할 경우 단체에서 지정한 사임서 양식을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으로 사임이 처리된다.
- (5)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 한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회의 동의를 거쳐서 해임할 수 있다.
- (6)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 후에 특별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 된다.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01.01~12.31) 기준 당해 연도 12월 01일에서 차후 년도 01월 31일까지 소집하며, 당해 연도 12월에 정기총회 소집될 경우 총회의 회계 처리 보고는 (01.01~12.31)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임시총회 개최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며 4일 전까지 우편, 유선, 무선, 문자, SNS 등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요구할 수도 있음.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할 경우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 및 출석을 갈음 할 수 있다.
3.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때에는 참석불가사유와 안건내용에 의사표시를 하여 총회 1일전까지 단체에 도착 되도록 [인편, 우편, fax, 메일, 온라인 서면결의양식, 카카오톡 서면결의(화면 캡처 보관) 등] 제출하여야 한다.
4. 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 시 안건에 찬성하는 녹화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회의록작성 및 관리)

1. 단체는 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장 및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 단체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자 수 (3) 회의안건 (4) 의결사항 + 서명부(출석회원)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운영이사 7인 이상과 감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의결권이 있는 이사의 2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임원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대외적 업무협정(약)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서면결의 허용)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회의록작성 및 관리)

1. 단체는 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장 및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 날인 하여 단체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회의의 일시 및 장소 (2)출석자 수 (3)회의안건 (4)의결사항 + 서명부(출석회원)

제6장 사업진행

제28조(사업진행기간)

사업진행기간은 구성된 날부터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 후 해산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29조(사업포괄승계)

총회전 단체에서 기 추진되었던 모든 사업 및 업무와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원)

1.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① 회비(이사회에서 구체적인 회비금액 및 운영규칙 등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③ 각종 기부금
 - ④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⑤ 기타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드림스드림 홈페이지(www.dreamsdream.org)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1조(회계연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1. 단체는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얻어 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단체의 업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총회시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최소 연 1회로 한다.

제34조(임직원의 보수 등)

1.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에 대한 지급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유급직원 채용시 이사회를 통한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임직원은 이사회를 통한 별도의 내부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회장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팀을 둔다.

1.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기부금 인터넷 공개 및 해산시 규약

제36조(사무국)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드림스드림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9장 보 칙

제37조(단체해산)

1.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8조(다른규정의 적용)

1.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단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 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2.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9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1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는 경우 총회에서 해석한다.

제40조(소송관할) 단체와 회원간의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은 단체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도 정기총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단체 설립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제4조(사업포괄승계)

총회 전 단체에서 기 추진되었던 모든 사업 및 업무와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한다.

제5조(사업진행기간)

사업진행기간은 구성한 날부터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 후 해산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1차 정관 개정일: 2016.12.15.

2차 정관 개정일: 2017.12.14.

3차 정관 개정일: 2021.01.21.

4차 정관 개정일: 2023.01.19

분야별 100% 재능기부단

※ 드림스드림은 모든 회원의 100% 재능기부로 이루어집니다.

분류	세부분류	이 사	팀 장
이 사 회	운영이사	최수혁(회장), 고봉익(수석부회장), 한건수(사무총장) 임채중(이사장), 김성일, 김은주, 이동화, 이승언, 조민율	지승희 (사무국장) 김도경(서기)
	감사	이은주, 주진용	
역 할 이 사	명예 부대표	이지성	
	고문팀	윤승렬, 이태수, 최배진	김재한
	자문팀	강동진, 강두영, 강현수, 구본철, 김상배, 김세종, 김영선, 김이식, 김용호, 김중철, 남미경, 박래득, 박명규, 김박종국, 박준용, 박정호, 배효동, 서원균, 손문탁, 송인선, 심홍식, 여현덕, 유기은, 윤순재, 이강락, 이수정, 이원형, 이인석, 이지영A, 이협승, 정종섭, 조대연, 지대영, 왕기래, 최충원, 홍영희	허미정
	기획팀	김경민, 김상민, 김성원, 박현호, 박흥규, 서윤성, 송진호, 양지훈, 이은희, 이주경, 장준민, 정태열, 조욱제	주혜영
	사업팀	권영호, 문경록, 박은현, 박종혁, 박형준, 신동헌, 양창국, 오병엽, 이영우, 이종수, 정해권	고승일
	실행팀	김승현, 김성현, 김영민, 김정숙, 김충환, 문상재, 박윤수, 오권형, 이주호, 장원태, 정병현, 조현섭, 채형석	최문정
	미디어팀	박효재, 안효진, 유효석, 이은봉, 장영현, 표성일	손하준, 천석용
	IT온라인팀	국현규, 문정민, 이창신, 이태규, 정대환, 정원혁	이현우
	건축팀	강달철, 김재경, 김호창, 장재희, 정재선, 조병욱, 황종철	손흥수
	홍보팀	곽능희, 김대형, 샬롬킴, 송지숙, 임준오, 이동운, 한정선	송진영
	마케팅팀	김승길, 김용휘, 유연숙, 이서석, 이유정, 장미순, 차은경	임조은
	콘텐츠팀	고종곤, 김석봉, 김요셉, 김은영, 김종두, 김주윤, 김준봉B, 김진희, 김철용, 김도경, 문병욱, 박상욱, 박연조, 박정애, 박준식, 배선이, 백시현, 서진희, 손정숙, 신경순, 신만재, 신병준, 안재형, 오덕성, 이미향, 이상원, 이지영B, 이진훈, 이창호, 정재천, 정주명, 정일만, 임정택, 정충효, 최창욱, 호성숙, 홍순아	이지현B
	국내지부팀	강성민, 계연우(광주), 이돈성(광주), 김석칠(부산), 김형철(대전광역시), 민병수(태백시), 손경숙(여수), 오병구(시흥시), 윤진수(서서울), 이길영, 이창흡(창원시)	김윤교
	글로벌팀	김영석, 김주혜, 박용욱, 엄태인, 오애란, 이동훈	김동기 황진송
	문화팀	박경률, 박경배, 안찬용, 안현중, 오혁, 이요셉, 이은경, 이지현A, 장미경	이소영
	중보팀	권은주, 안효순, 정민경, 정진영	강유진
	칠드런	인도네시아: 최윤정, 시리아: 오미소	
홍보 대사	차유람, 김브라이언, 강찬, 정희일, 드러머 리노		

해외지부	<미국> 유성현(미국서부대표), 신동철(팀장), 정언주(홍보이사), 실행이사: 김수진, 김철, 박두나, 박은서, 신지언, 황진영, John Yoo, Jenny Yoo, 문화이사: 정명화 자문이사: 박현수, 황보삼열, IT온라인이사: 정데이빛 류호석(샌프란시스코 대표), 김소연(콘텐츠이사), 정연오(샌프란시스코 팀장) 김철호(미국남부대표), 박준희(콜로라도 대표), 이충우(애틀란타 대표), 이근우(미시간 팀장) <캐나다> 토론토 실행이사: 김지영, 김선헌 <호주> 윤정호(호주동부대표) <프랑스> 유승희(프랑스 파리) <일본> 후카미 사토시(일본남부대표) <인도> 마틴 아론(인도남부대표) <아르헨티나> 한영천(부에노스아이레스 대표) <아프리카> -Hmarthens Hakizimana(아프리카 대표), Eric GUEDENG LEDJEBGUE(차드대표), 김만호(탄자니아 대표)
--------------------	---

MOU 단체	소명중고등학교(교장 신병준) ICCMF(대표 이몽식) 갯터브하우스(대표 정진화) 필통미니스트리(대표 김정환) 아프리카리더십(대표 이효근) (주)와이즈디어(대표 표성일) (주)청밀(대표 양창국) Sydney Hosanna(대표 임성식) (주)TMD교육그룹(대표 고봉익) (주)플러스코프(대표 김인지) 지파운데이션(박충관) Beijing A2 Culture Limited Co.Ltd(대표 류호선) 희망도서관책나눔협회(대표 이창준) LTMC(대표 유인자)	(주)닷 (대표 김주윤, 성기광) WTIT(이사장 김정중) (주)플러스코프(대표 김인지) (사)새길과새일 탄자니아 적정기술거점센터 (센터장 이협승) E3empower(대표 이지영) (주)웨어라이트(대표 박은현) 리조이스심리상담센터(대표 홍순아) 차드 정부(차드 대표 에릭) (주)이포넷(대표 이수정) 달란트TV(대표 박효재) (사)올피플(대표 김종두) (주)메가인베스트먼트(대표 박종혁) 드림래더(대표 장순민)
----------------------	--	--

드림스드림 정기후원자 신청서 (제출용)			
이 름		성 별	
핸드폰		이메일	
주 소			
월후원 금액(√)	____ 5천원 ____ 1만원 ____ 2만원 ____ 3만원 ____ 4만원 ____ 5만원 기타 ____만원		
입금일			
우리은행 1005-402-595949 드림스드림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해 주셔야 정기후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문의: 070-7500-3623, dreamsdream.org) CMS는 수수료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DREAMS DREAM			